

난민법안 조항별 검토의견

조문	제정안	수정안	이유
제2조 (정의)	<p style="text-align: center;">1장 총칙</p> <p>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u>우려</u>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u>우려</u>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u>우려</u>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u>합리적인 근거 있는 공포</u>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u>공포</u>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u>공포</u>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p>	<p>▶난민협약 영어본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는 표현은 “well founded fear of persecution”라고 되어 있어, 보통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번역이 잘못 번역이 되고 있으나, 난민협약의 불어본(난민협약을 포함하는 조약을 규율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불어본과 영어본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며, 위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의 표현은 “craignant avec raison”으로 직역하면 “합리적인 근거 있는 공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어본의 표현을 고려할 때 영어본의 well founded fear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라고 번역되기 보다는 “합리적인 근거 있는 공포”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함.</p> <p>▶따라서 입증책임의 정도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왔던 “충분한 근거 있는”이라는 표현을 “합리적인 근거 있는”이라고 옮기는 것이 타당함.</p>
제2조 (정의)	<p>4. “난민신청자”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p> <p>나. <u>난민인정불허결정이나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u></p> <p>다.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p>	<p>4. “난민신청자”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p> <p>나. <u>난민인정불허결정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u></p> <p>다.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p>	<p>▶난민신청자는 행정절차 및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난민 지위의 여부가 더 이상의 불복 방법 없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며, 난민인정절차는 법무부 단계에서의 심사절차와 이의신청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 항소 제기기간, 상고 제기기간에도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명확히 함.</p>

<p>제5조 (의 신청)</p>	<p>제2장 난민인정절차 등</p> <p>① 스스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장 난민인정절차 등</p> <p>① 스스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u>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서</u>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u>난민신청자는 한글이나 영어 또는 두 언어 모두 능숙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모국어로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난민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u> 신청서는 <u>법률대리인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u></p> <p>③ 국가기관에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공무원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의 통지 등 난민신청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이 조항에 관한 UNHCR의견 “난민지위신청은 신청자가 박해나 심각한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영토로 돌아가지 않을 국제적 보호를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이루어진 것이다. 난민지위신청은 한 개인이 법무부 대표나 경찰, 국경수비대, 또는 기타 <u>대한민국의 공무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u> 박해나 심각한 위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영토로 돌아가지 않을 보호를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이루어진다.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이 관할을 지니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p> <p>▶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주장을 담은 <u>한글이나 영어 또는 두 언어 모두 능숙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모국어로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난민인정신청을 확인한다.</u> 신청서는 <u>법률대리인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제출할 수 있다</u>“를 반영함.</p>
<p>제5조 (난민인정의 신청)</p>	<p><u>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난민인정불허결정 후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u></p>	<p>⑤ 난민신청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p>	<p>▶난민신청자의 개념 정의가 반복되는 부분 생략함.</p>
<p>제6조 (·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 의 신청)</p>	<p>①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도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공항·항만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적인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그것을 확인하는</p>

	<p>②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4주 이내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및 임시체류를 허가하여야 하고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p> <p>④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인정절차는 본 조항의 시간적 및 장소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른다.</p>	<p>6조 ② 내지 ⑤ 삭제</p>	<p>제1항의 규정만 남기고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p> <p>▶난민협약 제31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난민의 경우에도 그 입국의 방법을 문제 삼아 벌(행정벌, 형사벌 포함)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금과 같은 이동의 자유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으나, 단지 신원확인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만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따라서 신원확인을 위한 일정기간의 이동의 자유 제한은 제20조의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되므로 제6조 제3항과 같이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음.</p>
<p>제8조 (의 심사)</p>	<p>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난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성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u> 난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성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u>난민신청자로부터 면접내용의 녹음 혹은 녹화 요구가 있는 경우</u> 면접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p>	<p>▶이 조항에 관한 UNHCR의견은 1심 면접이 지연될 수 있는 최대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임.</p> <p>난민인정에 관한 모든 분쟁이 면담시 진술의 일관성과 통역의 정확성에 관한 것인 바 현행 제도하에서는 면담 진술 및 통역내용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어로 기재된 면담기록부밖에 없으므로 면담과 통역 내용을 기록하여 사후에 증거로 삼기 위하여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면담내용을 녹음 내지 녹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상면담실이 있으므로 녹음, 녹화 및 그</p>

		하여야 한다.	기록의 보존에 기술적 문제가 없음
제9조 (및 입증 정도)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모든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를 공유한다. ②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무부장관은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엔난민기구의 유권해석과 각국의 판례 등을 통해 확립된 난민 관련 특수한 증거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 ▶결정과 판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제14조 (통역)	② 난민신청자는 자비로 본인이 지정하는 통역에게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삭제	▶UNHCR의견은 통역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민신청인이 지정하는 통역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권고함
제29조 (난민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제3장 난민위원회 ① 난민정책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3장 난민위원회 ①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난민정책에 관한 조항 삭제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항 추가
제30조 (난민위원의 임명 및 자격)	① 위원은 난민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난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또는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중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위원은 난민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난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난민 관련 소송을 최소 5년 이상 수행한 자	▶난민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민관련 지식과 경험 부분 추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분 삭제

	<p>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p> <p>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p> <p>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난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p> <p>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p> <p>④ 정부위원의 수는 민간위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난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p> <p>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p> <p>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연임할 수 있다.</u></p>	
<p>제31조 (위원회 의 업 무)</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한다.</p> <p>1. 난민의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p> <p>2. 난민인정이 불허된 자 및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3. 인도적지위의 인정이 불허된 자 및 인도적지위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4.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p> <p>5.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p> <p>6. 그 밖에 난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한다.</p> <p>1. 난민인정이 불허된 자 및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2. 인도적지위의 인정이 불허된 자 및 인도적지위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난민 정책 및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 삭제</p>

	<p>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그 외의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해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u>제1호 및 제2호</u>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그 외의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해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32조 (난민연구조사관)</p>	<p>① 위원회에 1인 이상의 난민연구조사관을 두되, 난민연구조사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p> <p>② 난민연구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운영 보조 2. 난민정책 등에 대한 연구 3.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p>① 위원회에 5인 이상의 난민연구조사관을 둔다.</p> <p>② 난민연구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운영 보조 2.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p>▶난민연구조사관을 5인 이상으로 확대</p> <p>▶난민정책에 대한 연구 기능 삭제</p>
<p>제35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p>	<p>① 법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정보 및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난민 등의 상황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등에 관한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및 장차 시행될 법령과 행정규칙 4. 난민인정 또는 이의절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난민위원회에의 의견 제시 <p>② 법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이 있</p>	<p>삭제</p>	<p>▶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이동(제 1장 총칙 부분으로 이동하는 방안)</p>

	<p>거나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난민신청자와의 면담 2. 난민전담공무원, 난민담당공무원 또는 난민연구조사관의 면접과정에서의 참여 3. 난민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참여 4. 난민인정 또는 이의절차 관련 서류 검토 및 법무부장관 또는 난민위원회에 의견 제시 <p>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 및 이의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유엔난민기구에 난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위 기구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36조 (처우)</p>	<p>제4장 난민 등의 처우 제1절 난민의 처우</p> <p>① <u> </u>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장받는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p>	<p>제4장 난민 등의 처우 제1절 난민의 처우</p> <p>① <u>난민</u> 등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장받는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난민</u>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p>	<p>▶국제법의 적용과 정책의 수립은 난민 뿐만 아니라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p>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난민에</u>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법령의 개선, 관련 부처 혹은 부서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 관련 법령의 개선, 관련 부처 혹은 부서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7 조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제2절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27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제2절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제27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48 조 (원 등)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u> ② 법무부장관은 <u>난민인정절차가 난민인정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계를 지원하여야 한다.</u> ② 법무부장관은 <u>난민인정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u>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현물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난민신청자의 개념 정의가 반복되는 부분 생략함.
제 49 조 (주거 지원)	① <u>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할 때까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다만, 본 주거시설은 자유로운 입소와 퇴소가 보장되는 주거 시설이어야 한다. ② 주거시설의 종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u>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다만, 본 주거시설은 자유로운 입소와 퇴소가 보장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한다. ② 주거시설의 종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4조 제1항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p> <p>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의 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p> <p>③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 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에 따라”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p> <p>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 중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으로 한다.</p> <p>제2조 제4호 중 “난민여행증명서”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이하 “난민여행증명서”라 한다)”로 한다.</p> <p>제16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4조 제3항, 제76조의 2부터 제76조의 10까지의 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0호 및 97조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⑤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	--	--

		제3조 제2항 제9호 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를 “외국인의 출입국·귀화”로 한다.	
--	--	--	--